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8491

제안연월일: 2025. 2.

제 안 자: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	의안 번호	대표 발의자	발의일자	회의정보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710	황희의원 등 11인	'24.8.12.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4.11.19.)		
				소위 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5.1.16.)		
	2203231	박정하의원 등 14인	'24.8.27.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4.11.19.)		
				소위 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5.1.16.)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 1. 21.)는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 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문화영향평가의 후속조치는 평가결과를 대상 계획·정책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에 그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 및 평가환류사항의 제출을 의무화 하고, 제출된 사항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보완·조정 및 관련자료 요청권한 등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 및 전담기관 지정을 통해 제도의 전문화·효율화를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 신설).

또한, 현재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문화포털 구축·운영,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문화정보원은 법정법인이 아닌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의 지원에 한계가 있는바, 문화정보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운영과 문화정보자원의 통합 관리 지원 등 기능을 강화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제3항, 제11조의3 신설 및 제13조의2).

법률 제 호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이하 이 조에서"를 "이하"로 한다.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문화영향평가 결과의 활용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대상 계획·정책 에 대한 평가결과를 포함한 문화영향평가서와 이를 해당 대상 계획 ·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 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항을 검토하여 계획·정책의 보완·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서와 이를 해당 대상 계획·정책에 반영한 결과(제3항에 따라 보완·조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의3(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문화영향 평가 수행기관(이하 "평가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국·공립 연구기관
 -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문화분야의 정책 연구와 학술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영향평가를 하려는 자는 평가 수행기관에 문화영향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④ 제1항에 따른 평가 수행기관의 지정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기준 및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4(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영향평가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이하 "평가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1. 문화영향평가 지표 개발 등의 조사 · 연구
- 2. 문화영향평가 관련 교육·훈련
- 3.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통합평가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4. 평가 수행기관에 대한 평가
- 5.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서 등에 대한 검토지원
- 6. 그 밖에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평가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전담기관과 이를 지원하는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을 "전담기관과 문화정보화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로 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조의3(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 관 등의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정보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 ④ 정부는 정보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⑤ 정보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지능정보화 기본법」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등 문화정보화 관련 계획의 수립 지원
 - 2.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법·제도·기술의 기획·조사·연구·개 발
 - 3.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문화정보화 사업에 관한 전 무기술 지원

- 4. 문화 분야 데이터의 수집·관리·융합 및 개인정보 활용 지원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 5. 문화정보서비스 제공체계 구축·관리·운영과 문화정보자원의 통합 관리 및 운영지원
- 6. 문화정보화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훈련
- 7. 문화정보화 확산을 위한 국제교류 · 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 8. 문화 분야 사업 활성화 및 업무지원을 위한 정보화 사업
- 9.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 10. 그 밖에 정보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 ⑥ 정보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⑦ 이 법에 따른 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문화정보원 또는 이와 유 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제11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11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2. 제11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문화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 청을 사용한 자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 및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최초로 한국문화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정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이하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이라 한다)이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한경우에는 제11조의3에 따라 설립된 정보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은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 ② 이 법에 따른 정보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의 모든 권리·의무와 재산관계를 승계한다.
 - ③ 이 법에 따른 정보원 설립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의 명의는 정보원의 명의로 본다.
 - ④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정보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 ⑤ 이 법에 따른 정보원 설립 이전에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이 행한 행위 또는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 는 정보원이 행한 행위 또는 정보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 다.
- ⑥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 정한 것은 정보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무) ① ~ ③ (생 략) 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 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 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의2(문화영향평가 결과의 <신 설> 활용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대상 계획 · 정책에 대한 평가 결과를 포함한 문화영향평가서 와 이를 해당 대상 계획ㆍ정책 에 반영한 결과를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 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항을 검 토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 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 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 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 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항을 검 토하여 계획·정책의 보완·조 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중 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보완·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서와 이를 해당 대상 계획·정책에 반영한 결과(제3항에 따라 보 완·조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국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3(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 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

<신 설>

체 등을 문화영향평가 수행기 관(이하 "평가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국 · 공립 연구기관
-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한 연구기관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 른 대학
-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문화분야의 정책 연구와 학술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 영향평가를 하려는 자는 평가 수행기관에 문화영향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 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 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 설>

- 3.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 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④ 제1항에 따른 평가 수행기 관의 지정 및 제3항에 따른 지 정취소의 기준 및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9조의4(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영향평가에 관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전담하는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이하 "평가 전담기관"이라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1. 문화영향평가 지표 개발 등 의 조사·연구
 - 2. 문화영향평가 관련 교육·훈 <u>련</u>
 - 3.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통합평 가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4. 평가 수행기관에 대한 평가
 - 5.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따른 문화영향평가서 등에 대한 검토 지원

- 6. 그 밖에 평가 전담기관의 지 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 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 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 전담기관의 지 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 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 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평가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제3항에 따른 지

제11조(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와 개발) ①·② (생 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개발하는 전담기관과 이를 지원하는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정취소 · 업무정지	의	기준	및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학	한 사형	}은
대통령령으로 정학	 한다.		

제11조(문	화 진흥	등을 위험	한 조사・
연구와	개발)	1.2	(현행과
같음)			

3								
					- <u>준</u>	[담기] 관	과
문호	화정	보:	화를	전문	-적	으로	지	원
<u>하</u>	=	전 '	담기:	<u> 관을</u> -				

제11조의3(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정보원 (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정보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④ 정부는 정보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 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5 정보원은 설립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 업을 수행한다.
- 1. 「지능정보화 기본법」제7조 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 획 등 문화정보화 관련 계획 의 수립 지원
- 2.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법・제도・기술의 기획・조사・연 구・개발
- 3.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 기관 등의 문화정보화 사업에 관한 전문기술 지원
- 4. 문화 분야 데이터의 수집· 관리·융합 및 개인정보 활용 지원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 업
- 5. 문화정보서비스 제공체계 구축·관리·운영과 문화정보자 원의 통합 관리 및 운영지원
- 6. 문화정보화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훈련
- 7. 문화정보화 확산을 위한 국 제교류·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 8. 문화 분야 사업 활성화 및

제13조의2(과태료) ① 제11조의2 제13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 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문화관 광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 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신 설>

업무지원을 위한 정보화 사업 9.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 하는 사업

- 10. 그 밖에 정보원의 설립 목 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 업
- ⑥ 정보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⑦ 이 법에 따른 정보원이 아 닌 자는 한국문화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 제11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또는 이 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2. 제11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문화정보원 또는 이와 유 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